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는등 비영업용 자동차의 세율을 하향 조정함.(안제 39조)
- 종전에는 3월, 6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1월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(안제40조)
-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, 농지의 변동신고등 일부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삭제함.(안제34조, 제49조, 제81조, 제94조, 제100조)

□ 검토의견

법령적합성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 제39조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, 동 조례안 제40조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납기와 징수방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.
- 개정조례안의 기타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

내용적 타당성 검토
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신고의무조항의 일부분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 위주의 행정에서 민 위주의 행정을 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
- 개정 조례안 제39조, 제40조의 경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·개정범위의 한계인 법령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